

본인의 초상에 대한 권리

(법원의 주지)

기본법 제 5 조 : 저작권법 제 22, 23, 33 조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본인의 초상이 그릇되게 촬영당하여 출판물에 보도됨으로써 본인의 초상권이 침해됐을 경우에 이를 보호해야 한다.

칼스루헤 고등법원,

1979년 10월 2일 결정

- 4 Ss 200/79-

(사실개요)

피고는 월간으로 발행되는 하이델베르크 평론지의 편집위원으로서, 하이델베르크 중앙로의 인도보호구역 개통식소식을 보도하면서 질서정리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표제를 사용하여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경찰관이 질서정리에 관한 업무수행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책임자를 촬영하여 관계기사와 함께 공표하였다. 그런데 기사와 함께 공표된 사진의 주인공은 현장을 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사복을 한 채 경찰의 직무수행을 확인하는 대리대표자로 파견나와있던 자였다. 그러나 동지에 공표된 질서정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게재된 사진은 부분적으로 눈에 보이는 단면만을 불균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다. 이 사진은 또한 편집위원인 피고의 동의하에 비판적 기사와 함께 게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경찰관은 고의로 자신의 초상권에 대한 침해를 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심에서는 저작권법 제 33 조 1 항에 의거해 피고가 저작권법 제 22 조, 23 조를 위반하고 개인 의 기상을 공표한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피고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은 일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는 계속해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재판청구를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판결이유)

칼스루헤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결정이유를 밝혔다..

『피고가 항소심 결정의 재심리를 요구한 것은 피고의 상소권 행사에 아무런 부족함도 없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동지에서 원고를 현재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 자로 경찰간부 E 를 지적하는 기사와 함께 사진을 공표했으므로 저작권법 제 23 조에 위배되고, 더구나 본인의 동의없이 공표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자신의 과실에 대한 상소를 구한 것은 부적당하다고 밝혀진 바 있다』

한편 칼스루헤 고등법원의 제 2재판부는 이 사건 전인 1979년 7월 27일에 이 사건과 유사한 판결에서 경찰간부에 관한 사건을 결정(2Ws 6/79)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동지에 게재된 사진이 특정한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군중의 시위 행위에 관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카메라는 사법절차상 강제로 압수되었으며, 임의로 공표한 기사로 인해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확정판결을 했다.

『피해자 P씨는 기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로서 P씨의 동의없이 본인의 사진이 공표되었다(저작권법 제 23조 1항). 판례와 여러 학설에서는 이미 특정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보도할 때 「절대적인」자와, 「관련된」자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노이만-두에스부르크, 법률신문 1960; 뢰플러, 언론법, 1969, 68면; 연방대법원, 신법률주간지, 1965, 2148부터 2150까지; 코브렌츠 고등법원, 법률신문, 1973, 279, 281).

첫번째 사항에 관한 것은 오랫동안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유명도가 있는 인격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 예로 정치가, 유명한 작가, 작곡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용어는 공개성 원칙에 따라 특정사건, 즉 공익과 관련된 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달리 지칭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개념이다.

피해자인 P씨는 위의 어떤 경우에도 속하는 인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다. 더욱이 원고는 피고가 관련인쇄물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대단히 큰 위험을 초래하고, 프라이브르그에서 있는 시위행동에 관여된 듯이 보도함으로써 알려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어떤 특정사실을 보도할 때 공표할 수 있는 공개적인 정보의 이해에 따라 보도했다는 주장은 단지 저작권법 제 23조 1항의 첫번째 단서조항의 예외적인 행위를 가리키려는 것 뿐이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 23조 1항의 3번째 단서조항에 관한 것은 현재의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위에 관련한 사람들 개개인에 관한 예외는 이러한 조항(본 캄저, 저작권법, 3968, 122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칙의 적용은 경찰간부인 E에게도 적법하다.

피고는 현재 야기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하이델베르크 인도보호구역의 개통식에 관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이라는 판결에 대해 상소를 열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는 그 개통식에 참석한 공무원을 고귀한 인격으로서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또한 피고는 어느 면에서, 완전히 원고의 의도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즉 원고 자신이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또한 원고가 구경꾼 속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실려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본 사건과 같은 의미를 지닌 사건을 칼스루헤 고등법원 제 3재판부가 1977년 8월 16일에 결정(3Ws 32/77)한 바 있다. 그 결정은 정치적인 움직임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 판례였으나, 후에 원고가 법원건물을 나올 때 사진촬영을 하여 보도하자 이에 관해 제기된 사건이 중복된 사례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러한 판례를 선례로 할 때 출판의 자유와, 자유로운 의견표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기본법 제 5조 1항).

이러한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서,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민주국가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로운 의견표명에 관한 기본권을 가장 고귀한 인권과 명백히 동등한 것으로 존재해야 함을 밝힌다(연방대법원판례 7, 198, 208). 이러한 판결에서 밝히고 있는 사항은 기본법 제 5 조 2 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일반적인 법규의 규정에도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의견표명에 대한 권리는 개인의 명예관과 직결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기본법과 일반 법규사이의 상호관계에도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 사건은, 자유로운 민주국가에 존재하는 기본권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 의도를 충분히 인식함으로써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사건에 대해 기본법은 피고에게 제한된 권리행사가 따랐어야만 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연방대법원판례 7, 198, 209).

이러한 점은 또다른 연방대법원판례(연방대법원판례 20, 162, 176, 177)를 고려해 보아도 피고의 출판의 자유에 대한 당법정의 판결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일반적 법규의 차원에서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의 의미를 해석할 때 출판자유와 기본적 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본법에 따라 내린 하이델베르그의 1 심판결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겠다.

피고는 경찰공무원의 초상작성을 의도적으로 제작공표한 것은 아니며, 단지 하이델베르그 인도보호구역의 개통식에 관해 보도하기 위해 특정사진에 대한 정보의 공개성이란 원칙에 따라 공표하게 된 점은 인정된다. 그리고 개인적 사항에 관해 일반적으로 중점을 두어 보도하려고 하지 않았음도 밝혀진 바 있다(개통식 소식에 중점을 두고 개통식에 대한 처사와 참석한 내빈들에 관한 소식을 중점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눈에 잘 안 띄게 현장에 머물러 있음이 명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드러내 놓고 그에 관한 기사를 쓰고, 이와 함께 그의 초상을 공표한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고 있다. 특히 이 보도에서 원고에 대한 조그마한 암시에도 불구하고 일반독자는 한 눈에 사진의 주인공이 원고임을 알 수 있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원고에 관해 개인적인 사항을 폭로함으로써 그의 직무상의 의무를 방해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사복경찰의 직무를 고려해 볼 때 그의 권리와, 법규를 유지하기 위한 명백한 보편적 이해는 이러한 확실한 상황에서는 출판자유에 대한 우위가 인정되므로 피고가 관련기사와 함께 본인의 초상의 유포를 명백하게 행하는 어떠한 경우에거나 원고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정의 이러한 판결에 따라 피고는 모든 사건에 관해서 보도할 경우 정확한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여 공표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본인의 초상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권리에 대해서는 기본법 제 1 조 1 항과, 제 2 조 1 합의 특별규정에 따라 보편적 인격권을 오도한 (연방대법원판례 35, 202, 224, 225)에 대한 권리침해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결정했다(함부르크고등법원, 법률평론지 1973,

69, 70 ; 브레멘고등법원, 신법률주간지 1977, 158, 159 ; 연방대법원, 신법률주간지 1975, 2075, 2076).